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. 3. 24 선고 2021가합26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3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49,32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2. 5.부터 2021. 9. 5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